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421
------	------

2026. 3. 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9일, 서상열 의원(찬성자 18명)

나.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3. 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상열 의원)

1. 제안이유

- 코로나 이후 고척돔 등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시스템들의 식사가 외부 케이터링 등을 통해 조달됨에 따라 인근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시립체육시설 운영 시 주변 상권과의 협력 및 상생 방안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 원칙을 세우고 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리·운영의 일반원칙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주변 상권과의 협력, 상생 도모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에 체육시설과 주변 상권 간 협력 및 상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의2).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윤희)

가. 개정안의 개요

- 최근 시립체육시설의 각종 행사 진행 시 관련 종사자들이 시설 인근 상권 대신 행사 수행업체의 자체 급식 등을 이용하여 주변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 운영 시 주변 상권과 협력 및 상생 방안을 운영 원칙과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주변 상권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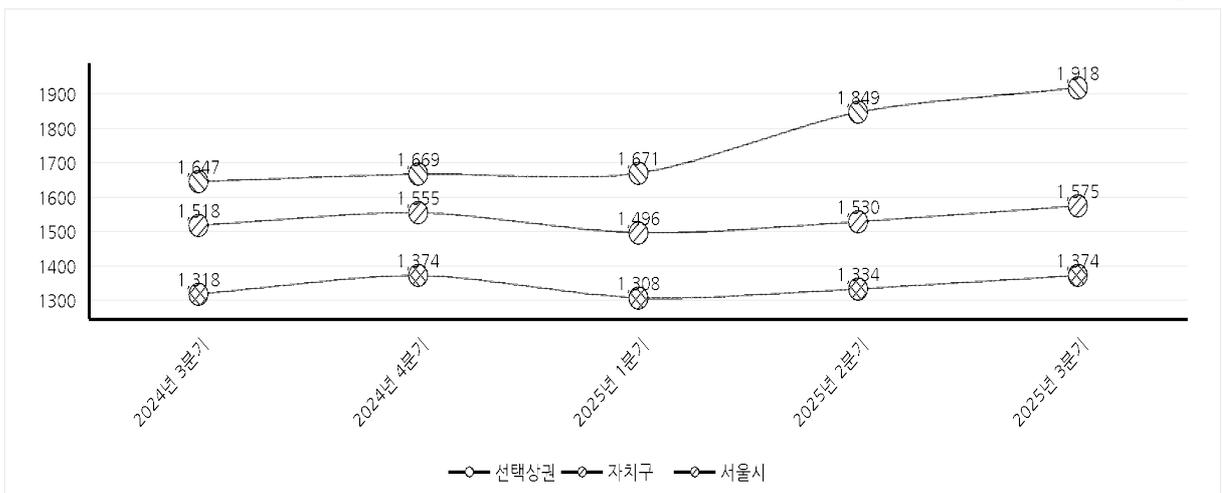
나. 개정안의 필요성

- 시립체육시설의 대규모 행사개최가 갖는 긍정적 에너지와 경제적 파급력이 장내에서 끝나지 않고 시설 밖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임.

- 다만 동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 상권’은 통상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화와 용역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지칭하는 단어이며, 이와 유사한 법령상의 정의¹⁾를 보면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통칭하여 지역상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므로 주변 상권은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라기보다는 지역의 상업을 대표하는 특정 이익집단이라고 규정될 것이며, 서울시와 같은 행정청이 행정적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도 법리적인 근거²⁾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³⁾’는 시립체육시설⁴⁾ 주변의 상권 매출액을 분석한 바, 잠실운동장 주변 상권[그림 1]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으며, 해당 자치구인 송파구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그림 1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3) <https://golmok.seoul.go.kr>

4) 잠실종합운동장(잠실본동), 서울월드컵경기장(성산2동), 고척돔구장(고척1동)

서울월드컵경기장[그림 2]과 고척돔구장[그림 3]의 경우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높지 않지만, 해당 자치구의 전체 평균보다는 매출액이 높거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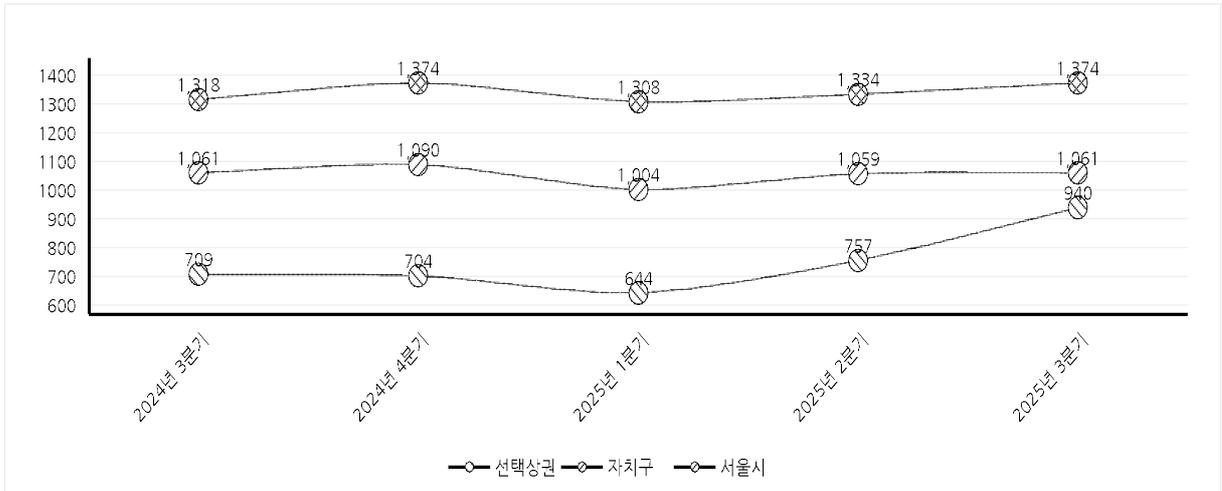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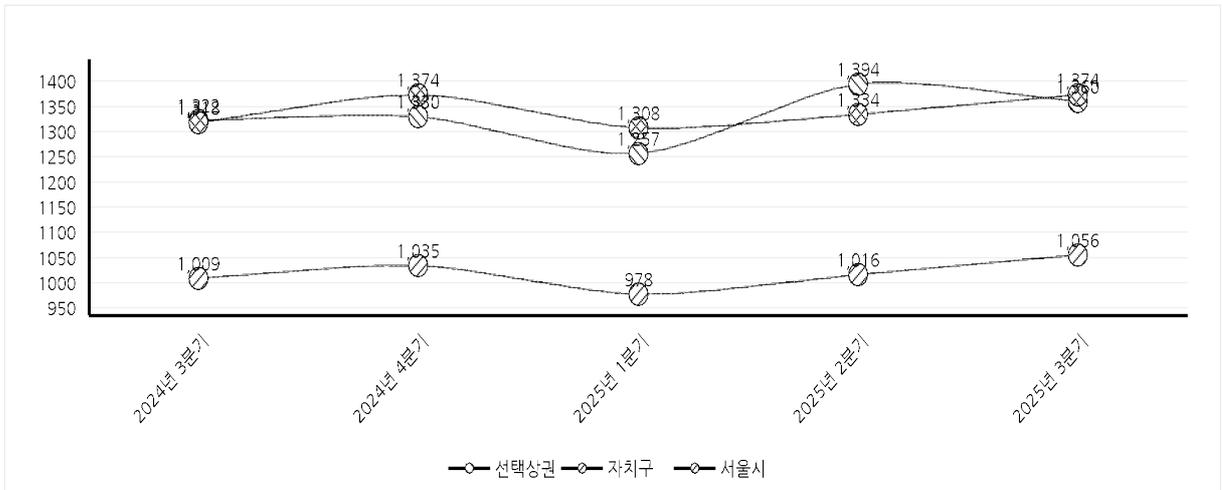


그림 3



- 결론적으로 해당 분석 결과는 현재 시립체육시설의 주변 상권이 다른 상권보다 행정적 특혜를 받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음.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관리·운영의 일반원칙(안 제3조제3항)

- 동 개정안은 시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일반원칙에 효율적인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과의 협력과 상생 의무를 포함하여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② (생략) <u><신설></u>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주변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정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시행하여 쇠퇴한 상권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은 협력과 상생을 상권의 임대인 및 임차인 간 협력과 상생협약체결,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 및 전통시장 간의 협력 등 사인 간의 협력과 상생을 명시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의 운영에 주변 상권과 협력·상생에 대한 의무부과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또한 시립체육시설은 체육 경기시설과 더불어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 중 하나로 각종 임대시설(할인점, 음식점, 매점)을 운영하고 있음.

동 개정안으로 인해 주변 상권과 협력과 상생을 추진한다면 경쟁 관계인 임대시설 사용자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며, 이에 입점 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장기적인 세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법령상 ‘주변 상권’의 범위 등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인 주변 상권 활성화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시립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목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조례는 체육시설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위한 조항이 있고, 시립체육시설의 경기 및 행사 등의 대관 시 지역사회 기여·협력도를 공공성 관련 요소로 평가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을 입안 가능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안드립니다.

< 수정 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 원칙) ①·② (생략) <신 설>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주변 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하여야 한다.</u>

(2)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안 제3조의2제2항제5호)

- 동 개정안은 서울시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의 세부사항 중 하나로 주변 상권 간 협력 및 상생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임.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 계획) ①·② (생략) 1. ~ 4. (생략) <u><신 설></u> 5. (생략)	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 계획) ①·② (생략) 1. ~ 4. (생략) 5. <u>체육시설과 주변 상권 간 협력 및 상생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은 2025년 3월 창원NC파크의 외벽 구조물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행된 것임.

또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조항에 관련된 사항을 이미 반영하고 있으므로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동 개정안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의 시행 목적과 상이하고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도 부합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수정 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 ① · ② (생략)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 ① · ② (생략) 1. ~ 4. (생략) <u>5. 체육시설과 주변 상권 간 협력 및 상생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 ① · ② (생략) 1. ~ 4. (생략) <u><삭제></u> 5. (개정안 제6호와 같음)

(3) 약칭 정비(안 제3조의2, 제9조 및 제10조)

- 동 개정안은 조례의 표현을 통일하고자 약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입법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약칭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를 줄여 대표할 수 있는 문구와 단어로 표시하는 대표적인 입법 방법이기애 특별한 법제적 문제는 없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시립체육시설의 대규모 행사개최로 발생하는 경제적 과급효과가 시설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시립체육시설 주변 상권이 다른 상권보다 행정적 특혜를 받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주변 상권 활성화가 시립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 계획의 시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함.

나. 수정주요내용

- 법령 상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 시립체육시설의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와의 협력·상생 노력을 담아 수정함(안 제3조제3항).
-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의 시행 목적과 상이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3조의2제2항제5호).

VI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8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21
----------	------------

제안년월일 : 2026년 3월 6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시립체육시설의 대규모 행사개최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시설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시립체육시설 주변 상권이 다른 상권보다 행정적 특혜를 받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주변 상권 활성화가 시립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 계획의 시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함.

2. 수정주요내용

- 법령 상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 시립체육시설의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와의 협력·상생 노력을 담아 수정함(안 제3조제3항).
-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의 시행 목적과 상이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3조의2제2항제5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3조의2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② (생략)</p> <p><신설></p>	<p>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주변상권과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조의2(<u>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u>) ① 시장은 <u>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이하 “<u>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u>”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u></p> <p>② <u>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제3조의2(<u>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u>)</p> <p>① ----- <u>체육시설의</u> -----</p> <p>----- <u>체육시설 관리·운영</u> -----</p> <p>----- <u>체육시설 종합계획</u> -----</p> <p>-----</p> <p>-----</p> <p>② <u>체육시설</u> -----</p> <p>-----</p> <p>-----</p> <p>-----</p>	<p>제3조의2(<u>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u>)</p> <p>① ----- <u>체육시설의</u> -----</p> <p>----- <u>체육시설 관리·운영</u> -----</p> <p>----- <u>체육시설 종합계획</u> -----</p> <p>-----</p> <p>-----</p> <p>② <u>체육시설</u> -----</p> <p>-----</p> <p>-----</p> <p>-----</p>

1. 시립체육시설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립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시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안
전·활용에 관한
사항
4. 시립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시립체육
시설의 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입장료)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
할 수 있다.

- 1.·2. (생 략)
3. 시장이 스포츠데
이로 지정한 날의

1. 체육시설-----

2. 체육시설-----

3. 체육시설-----

4. 체육시설-----

5. 체육시설과 주변
상권 간 협력 및
상생에 관한 사항

6. -----체육시
설-----

제9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2. (현행과 같음)
3. -----
----- 체육

1. 체육시설-----

2. 체육시설-----

3. 체육시설-----

4. 체육시설-----

<삭 제>

5. -----체육시
설-----

제9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2. (현행과 같음)
3. -----
----- 체육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100분의 30 금액.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

4.·5. (생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 라. (생략)

마. 시장이 스포츠 데이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100분의 30 금액.

시설 -----
-----.

--.

4.·5.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1.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체육시
설 -----

시설 -----
-----.

--.

4.·5.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1.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체육시
설 -----

다만, 시를 연고
로 하는 프로구
단이 있는 경기
장은 제외한다.

바. (생략)
2. ~ 5. (생략)

--. -----

-

바.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
음)

--. -----

-

바.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
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의 제목“(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을“(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립체육시설의”를 “체육시설의”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체육시설 관리·운영”으로,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을 “체육시설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시립체육시설”을 각각 “체육시설”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중 “시립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10조제1호마목 본문 중 “시립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 ② (생략) <u><신설></u></p>	<p>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조의2(<u>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u>) ① <u>시장은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이하 “<u>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u>”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u></p> <p>② <u>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립체육시설의 목표 및 기본방향</u> 2. <u>시립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u> 3. <u>시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안전·활용에 관한 사항</u> 4. <u>시립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한</u> 	<p>제3조의2(<u>체육시설 관리·운영 종합계획</u>) ① ----- <u>체육시설의 -----</u> ----- <u>체육시설 관</u> <u>리·운영 -----</u> --<u>체육시설 종합계획 -----</u> ----- -----.</p> <p>② <u>체육시설 -----</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체육시설 -----</u> ----- 2. <u>체육시설 -----</u> -- 3. <u>체육시설 -----</u> ----- 4. <u>체육시설 -----</u>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립체육시설의 진
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입장료)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10
0분의 30 감액. 다만, 시를 연
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

4. 5. (생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
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
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
용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
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
한다.

가. ~ 라. (생략)

마. 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

5. -----체육시설-----

제9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 체육시설 -----
-----.
-----.

4. 5.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1.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
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

바. (생략)

2. ~ 5. (생략)

----- 체육시설 -----

-----.

바.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